

군산시 공고 제2014-656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가목 의미 명확하게 규정

2. 주요내용

- 환지예정지 확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에 대한 규정 명확화

【현 행】

-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의하여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개 정】

-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각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종전토지가 그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하여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공영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 : 454-3663, FAX : 451-4281,
전자우편 : lkb498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도시개발계(전화 454-36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위치에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각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종전토지가 그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으로 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 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 ----- ----- ----- -----.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단서 신설>	1. ----- ----- ----- 가. ----- ----- .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위치에 정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	2. ----- ----- -----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각지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
리 순위에 의하여 다음 보
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
필지 이상으로서 제 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
로 한다.

<신 설>

다. (생 략)

3. (생 략)

나. 종전토지가 그위치에 해
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
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가
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
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
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으로
할수 있다.

라. (현행 다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군산시공고 제2014-71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개정('13.12.12.)시행에 따른 규칙위임사항 신설 및 기존 조문 정비 필요
-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에 대한 보완사항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요건 신설

□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응시요건 신설

- 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 경임)·3호(연구·근무경력자 경임)·9호(학위소지자 경임)에 의한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규칙으로 위임(영 §17④)
 - 시간제·한시임기제 경임시 자격증·근무경력·학위기준 신설(§14⑨, 별표5의3 신설)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등의 응시요건 신설

- 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 경임)에 의한 전문경력관 응시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전문경력관규정 §6 1호)

- 전문경력관 직위의 직무내용 다양성을 고려,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함(§14¹⁰ 신설)

나 전직시험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자격 관련 특례규정 신설

- 직종개편 후 전직(관리운영직군→일반직 유사직렬) 시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전형(+면접시험) 방법으로 전직이 가능토록 규정(특례규정 §5②)
-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경과자(서류전형+면접시험)에 대한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17⑤, 별표10 및 별표10의2 개정)
- 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에 구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17⑥, 별표7 개정)

다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일반직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폐지 및 직렬 신설(운전, 방호, 위생, 간호조무, 조리, 시설관리, 숙기)에 따른 일반직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 필요
-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자격증을 일반직 자격증에 통합(별표 5 개정)
- 신설직렬을 반영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개정(별표4 개정)
- 방호직렬 신규임용·전직시험 응시요건(신체조건) 신설(§15③, 별표4의2 신설)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종전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 폐지

-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개정

- (조문개정)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5), 응시자의 제출서류(§6②), 응시수수료(§6의2), 응시연령(§8), 신규임용시험의 특전(§13의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14①,④),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15의2),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24)
- (별표개정)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별표 5의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별표 7의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별표 8),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별표 13),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별표 15)

마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생략 대상 개정

-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신설(12.9.21)에 따른 회의록 작성 생략 개정(§3②)
 - 근속승진임용, 명퇴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임기제 임기연장 등

□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개정

- 임용령 개정(12.6.22 개정) 사항 반영,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개정(§6의2②)
 - 과오납 시,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 시, 7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시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시 가산 대상 자격증 근거 신설

-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2호 경임 제외)에 응시하는 사람이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5% 범위내에서 가산(§13의3②)
- 표준안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등을 규정한 별표 7의2의 임용계급에 전문경력관 추가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규정 개정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재 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규정 개정(§24②)

-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중 재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등록규정 신설

- 경채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도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오던 것을 공채시험 합격자의 등록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18조 ③ 신설)

□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 후임자 선발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28조 신설)

□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개정

- 심층면접제도의 도입 등 면접시험 제도의 변경으로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의 평정방법 등 변경(§13의2①, 별지 11~12)

□ 공무원시험 본인 응시 확인용 신분증의 종류 다변화

- 공무원시험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으로 제도개선(별지 3)

3 의 건 제 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4-2255, FAX 063-454-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제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제2차 시험”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이상

제8조제2호 중 “기능직 채용시험”을 “8급 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의 제목 “(서류전형 기준)”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②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 ③삭 제
-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다.

⑩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7조의4제4항”을 “영 제7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삭 제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삭 제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별표4,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3, 별표15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의2, 별표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11호서식, 별지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u>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u>	1. <u>법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제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u>
2. <u>명예퇴직 · 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u>	2. <u>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u>
3. <u>명예 · 조기 · 자진퇴직수당 지급</u>	3. <u>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u>
	4. <u>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u>
	5. <u>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u>
	6. <u>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u>
	7. <u>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u>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 실시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략)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차 시험에----- ----- ----- -----. ----- ----- -----.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 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현행과 같음)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1. 7급 이상 : 20세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기기관의 장은 제9조,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 ----- ----- ----- ----.
제13조의2 (서류전형 기준) <신 설>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제13조의2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토한다. ② (현행①과 같음) ③ (현행②과 같음)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u>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 및 <u>기능직공무원</u>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삭 제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u>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u>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u>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u> <u>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u>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u>

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삭 제>

3. (현행과 같음)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기능6급· 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기능직기능7급· 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 기능9급 이하

⑥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
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
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
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
는 사람은[별표 10]및[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
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
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
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
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
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
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
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
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⑨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3]과 같다.

⑩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여부” 로 본다. <u><신 설></u>	<u>③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4의 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u>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u>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u> 2. 특수환경 : <u>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u> 3. 특수지역 : <u>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 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u> <u>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u>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현행과 같음) 1. 특수직무분야 : <u>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u> 2. 특수환경 : <u>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u> 3. 특수지역 : <u>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u> <u><삭 제></u>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

제)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
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
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
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
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
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 설>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
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
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u><신 설></u>	<u>어야 한다.</u> ⑥<u>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u> <u>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6] 및 [별표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u>
제18조(<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u>)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 을 준용한다.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 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 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 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 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 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 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 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 ----- ----- ----- ----- ----- -----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 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 ----- ----- ----- ----- ----- ----- ----- ----- ----- -----

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 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 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 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 33조제9항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 ----- ----- ----- ----- ----- ----- ----- ----- -----<삭 제>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②-----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 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 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 무원으로서----- ----- ----- -----.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 의4제1항제2호----- ----- -----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 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 급) 영 제7조의5제2항 ----- ----- -----.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u>지방공무원수당규정</u>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u>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u> ----- ----- ----- -----.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심신장애로 교수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 3. 삭 제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삭 제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현행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		
사서	사서		(생략)	
<u><신 설></u>				
수의	수의		(생략)	
		...		
시설	지적		(생략)	
<u><신 설></u>				

비고(생략)

<신 설>

개정안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		
사서	사서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의	수의		(현행과 같음)	
		...		
시설	지적		(현행과 같음)	
의료 기술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1(생략)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4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수 있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 픽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비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 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 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삭 제>

비고

1.-----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
방송통신		(생략)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 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시설			(생략)			
<신 설>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
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기	전기	(생략)			
		...			
사무보조	워드	(생략)			
	필기				
	계리				
	사서				

비고(생략)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현행과 같음>
전산	전산	<현행과 같음>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 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 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 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 비, 양화장치운전, 캐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 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 비, 열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 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 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 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 전, 로더운전, 물러운전, 모터그레 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직 개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캐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 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 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자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 기, 전자카드
	원자력	<현행과 같음>
	금속 야금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측 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 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 괴검사
	섬유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염색
	일반화공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원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학취급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산업기사 <u>기능사</u>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업	<현행과 같음>

		농화학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식물검역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지	조경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잡수
		일반수산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수산물검사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수산양식
		어로		<현행과 같음>
		일반선박		<현행과 같음>
		선박항해		<현행과 같음>
		선박기관		<현행과 같음>
		해양교통시설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수질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대기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폐기물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조경, 산림, 환경</u>
	항공	일반항공 정비	<현행과 같음>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u>
		일반토목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u>
		농업토목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u>
		건축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가루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u>
		지적 측지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u>
		교통시설 도시교통시설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u>
		디자인	기술사~산업기사 <현행과 같음> <u>기능사</u> <u>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웹디자인</u>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u>기능사</u> : <u>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u>
	<u>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u>		<삭제>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시설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삭 제>
<삭 제>

비고1(생략)
2(생략)
3.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5의2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수 있다.

<신 설>

[별표 5의3]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제14조제9항 관련)

1. 별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 택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

2. 기능직공무원

직렬	계급	기능 67급	기능 89급이하
도 목	도 목	(생략)	
...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현행과 같음)		
사서	사서	(현행과 같음)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사
	일반전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철도
	전자	(현행과 같음)	반도체설계	메카트로닉스
녹지	산림자원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시설원예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물보호
해양수산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u>산업기계설비</u> 비.조선) 1·2급기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건	보건	(현행과 같음)	<u>방사선사</u>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	식품위생	(현행과 같음)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간호	간호	(현행과 같음)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시설	...	(현행과 같음)		
	<u>도시교통설계</u>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	통신사	(현행과 같음)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통신선로, 무선설비
	도시교통시설		정보처리	방송통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u>제1종운전면허(대형)</u> , <u>제1종운전면허(보통)</u> , <u>제2종운전면허(보통)</u>

[별표 7의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u>전문경력관 나군</u>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u>전문경력관 다군</u>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u>전문경력관 나다군</u>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별표 7의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 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현행	개정	
통신·정보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u>전문경력관 나군</u>	(현행과 동일)
	일반직 89급	일반직 89급, <u>전문경력관 다군</u>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u>전문경력관 나다군</u>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생략)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생략)	
가산비율	(생략)	
	(생략)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방송통신		(생략)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생략)

<신 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농촌지도	축 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	...	...	...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과 같음)	
가산비율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현행과 같음)	
가산비율	(생략)	
	(생략)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방송통신		(현행과 같음)	
		<삭 제>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	...	...	...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관련)

임용예정 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기능직 6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7급· 기능직 7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	8급· 기능직 8급	9급· 기능직 9급 이하
직무 분야								
경찰 공무원	(생략)							
		...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관련)

임용예정 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직무 분야								
경찰 공무원	(현행과 같음)							
		...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1. 연구직 및 지도직의 기술직공무원

직렬	직류	관련학과
공업	일반기계	(생략)
	일반전기	(생략)
	섬유	(생략)
	일반화학	(생략)
	금속	(생략)
	자원	(생략)
농업	일반농업	(생략)
	축산	(생략)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생략)
시설	일반토목	(생략)
	건축	(생략)
	측지	(생략)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생략)
보건	보건	(생략)

2. 지도직공무원

직렬	관련학과
농촌지도	(생략)
어촌지도	(생략)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의 기술직공무원

직렬	직류	관련학과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금	
	자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조,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의	수의학
	환경	일반환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산물검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축	건축(건축설비)
	지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지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종	항공운항학				
		정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무	약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제					
	보건	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렬	관련학과
농촌지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잡업, 잡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촌지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계급	2급	3급	4급
연구경력	10년	8년	4년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관련)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구경력	8년	4년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연구관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직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생 략)				
기능직공무원		기능 6급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이하
경찰공무원	(생 략)				
...					
별정직공무원	(생 략)				
고용직공무원					고용직
계약직공무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 신 설 >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삭제>						
경찰공무원		(현행과 같음)				
...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가급” 으 로 채직한 기간	“나급” 으 로 채직한 기간	“다급” 으 로 채직한 기간	“라급” 으 로 채직한 기간	“마급” 으 로 채직한 기간
	한시	“5호” 로 채직한 기간	“6호” 로 채직한 기간	“7호” 로 채직한 기간	“8호” 로 채직한 기간	“9호” 로 채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 군 20호봉 이하	“나” 군 24호봉 이상	“나” 군 23호봉 이하	“다” 군 25호봉 이상	“다” 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9급까지

직렬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 육행정, 사회복 지, 기업행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방송통신(전자 통신기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 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 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 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 도, 농어업토목,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 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 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 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 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 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 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 축목공, 목재창호,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 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 선로, 사무자동화, 전파 통신, 무선설비, 무선통

		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 기)	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 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 기설비, 전기용융, 철도신 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 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 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 방설비<전기분야>, 품질 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 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 기철도, 산업안전, 소방 설비<전기분야>, 품질관 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 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 체기계, 정보통신, 기계 안전, 공장관리, 소방설 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 닉스, 공조냉동기계, 철 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 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 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 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 형제작,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	산업기사(유회관리, 생산 기계, 전산응용가공, 기 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전 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 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 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 업기계, 배관설비, 정보 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 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 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 라믹, 고분자제품, 화공 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 품) 기사(공업화학, 화학류제 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 전, 가스, 품질관리, 식 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 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 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 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정지설 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 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 리, 고분자제품제조)
선택제 선택관 운영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 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 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 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 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 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 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 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회급감독 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 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 리사, 방사선사, 물리치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식 품) 임상실리사 2급, 응급구 조사 2급

2. 3. (생략)

4. 기능직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생략)	
...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
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
사 1급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

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기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도시교통시설	기 사: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 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사(3)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이상병리사(12) 발사서사(12) 방사선사(12) 치과위생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원소취급사(특수) 원소취급사(일반)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7)	이상병리사(8) 방사선사(8) 방사선사(8) 치과위생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원소취급사(특수) 원소취급사(일반)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이상병리사(5) 방사선사(5) 방사선사(5) 치과위생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원소취급사(특수) 원소취급사(일반) 감독자 임상심리사2급(3)	이상병리사(2) 방사선사(2) 방사선사(2) 치과위생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원소취급사(특수) 원소취급사(일반) 감독자 임상심리사2급	이상병리사 방사선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원소취급사 원소취급사 감독자 임상심리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수의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 (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 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행정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상)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자 원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 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
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잠 업	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 환 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계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펌,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공업연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학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사
농촌지도	농 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정,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정,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정,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농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을 장 :	산림	
	조 경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기 능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기 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산업기사 :	축산	
	기 능 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기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강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관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9] <개정 96.3.26, 07.5.23>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령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축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전송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에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찰공무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정보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공무원	<u>시간 선택제</u>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시,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박기계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축,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구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계,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양 수산업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직렬 \ 계급	연구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직렬 \ 계급	지도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정,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종사) 년 월 일까지						
	⑤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 2	선택 3	⑥가 산 기 표 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렌	(직)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⑮제 회 시험		⑮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⑭응 시 직 렌	(직)	⑯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	⑲응 시 계 급	급	⑳제 회 시험		㉕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㉑응 시 직 렌	(직)	㉒성 명			
	㉓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 2	선택 3		㉔주민등록 번 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203 - 1 1A
m²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⑳...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㉓...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㉒...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㉑...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⑮, 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㉒...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깥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 12호 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군산시공고 제2014-714호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동 규칙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동 규칙 근거조항 및 관련조항을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4-2255, FAX 063-454-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제7항”을 “제17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같은조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제18조제4항”을 “제17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비서제 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17조의3제7항</u> ----- ----- ----- ----- -----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 휴직 ·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 <u>제17조의3제1항</u> ----- ----- ----- -----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구의 폐치 ·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 ----- ----- ----- -----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절차) -----

---. -----제17조의3제5항---

-----.

◆군산시공고 제2014-715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2013.12.12.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4-2255, FAX 063-454-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생략)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공고 제2014-716호

「군산시 지방계약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임기제)으로 재분류되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 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되던 「군산시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규칙 폐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라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4-2255, FAX 063-454-22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정) 1998.11.20 규칙 제 18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 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영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장, 인사담당국장, 사업평가담당 국장, 기타 소속 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 호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 ①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 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부 칙(1998.11.20 규칙제 186호)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 ③(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시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필요지식☐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경력요건☐ 요구자격증☐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 제3호 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및근무부서	채 용 구 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 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목표

① 단 위 목 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 진 일 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교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년 월 일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채용기간	담당업무 내 용	채용신분	월 보 수 (봉급·수당)	예산확보 상 황	소지자격

2. 채용의 필요성

발신기관(부서)명

인

군 산 시 장 귀 하

군산시 고시 제 2014 - 42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4. 18.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미장지구 A-2블럭 공동주택

2. 사업주체(변경)

1) 명 칭 : (주)하나자산신탁

2) 대표자 : 이창희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2층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2블럭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47,309.0000m²다. 건축면적 : 9,496.7266m²라. 연 면 적 : 152,984.7866m²

마. 건축규모 : 아파트 13동 12~25층, 1,078세대

- 전용 59.9994m² 141세대- 전용 84.9965m² 435세대- 전용 84.9811m² 200세대- 전용 84.9810m² 134세대

- 전용 84.9785m² 54세대
- 전용 84.9917m² 40세대
- 전용 100.4358m² 74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 업 비 : 265,626,271천원

아. 사업기간 : 2012. 11. ~ 2015. 02.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요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건축면적	9,495.1286m ²	9,496.7266m ²	증1.5980m ²
연 면 적	152,983.1886m ²	152,984.7866m ²	증1.5980m ²
건 폐 율	20.07%	20.07%	
용 적 율	249.79%	249.79%	
주요변경사항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변경 : 103측면 ⇒ 102동 측면 경비실 면적 변경 : 14.6094m ² ⇒ 16.2074m ² (증1.5980m ²)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년 4월 18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1	현대메트로타워2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일원	-	증)26,990	26,990	

나.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31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 일원	26,990	원도심 지역 내 나대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로 원도심권의 상주인구를 증가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기능 및 미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1	74	10	국지 도로	84	경암동 369-31 대3-4	경암동 369-17 소2-736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폐지	소로	2	736	8	국지 도로	221 (174)	대명동 383-1 대2-3	대명동 대3-4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폐지	소로 1-74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736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 174m 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된 구간폐지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내 용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BL	26,990	1-①	대명동 385-1번지 일원	26,212	대지	공동주택용지
			1-②	경암동 371-1번지 일원	462	주출입구 완화차로	도로용지
			1-③	대명동 385-79번지 일원	316	부출입구 완화차로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25% 이하	법정 8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법정 1,000% 이하
		높 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름	

라.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대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지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을 불허함	
진출입 완화차로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완화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 대로3-4호선변 완화차로 : B=3.25m, L=172.5m - 대로2-3호선변 완화차로 : B=3.25m, L=111.0m	

3.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2	736	8	국지 도로	221 (47)	대명동 383-1 대2-3	대명동 대3-4	일반 도로		전북고136 (‘87.10.22)	

나. 나.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폐지	소로 2-736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구간 47m 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된 구간 외 잔여구간의 도로기능 상실로 폐지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4-43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2조·제88조·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4월 25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1-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사업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	연구시설	나포면 나포리 산21-18번지 일원	99,761	증)530	100,291	2014.3.21	지 적 분 할 에 의한 면적 증 가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위 치	시설결정 면적	실시계획인가 면적	비 고
연구시설	나포면 나포리 산21-18번지 일원	100,291㎡	100,291㎡	

5.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 외 1인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4. 9. 30.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생략
9.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등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관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나포면 나포리	312-7	장	10,078	358	(유)남북철강				
2	나포면 나포리	312-8	장	18,088	17,826	군 산 시				
3	나포면 나포리	332-1	도	684	157	전라북도				
4	나포면 나포리	332-2	잡	2,994	2,862	군 산 시				
5	나포면 나포리	332-5	도	24	16	전라북도				
6	나포면 나포리	360	잡	2,268	1,591	군 산 시				
7	나포면 나포리	산21-4	도	893	14	전라북도				
8	나포면 나포리	산 21-16	도	1,212	376	전라북도				
9	나포면 나포리	산 21-17	도	84	64	전라북도				
10	나포면 나포리	산 21-18	임	8,118	8,118	(유)남북철강				
11	나포면 나포리	312-9	임	84,719	68,909	군 산 시				
합 계				129,162	100,291					

군산시 고시 제2014-44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한국GM 군산사원아파트 신축공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9점), 파미유 아파트 신축공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8점), 금강2지구 오산2-1 경지재정리 사업지구 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4점), 문화동 셀브르아파트부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4점),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24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4월 24일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1	6152	X	276049.51	36°53'08"	X	376356.09	중부	6.89	경 암 동 490-15	2012. 11.29	철재
		Y	176249.96	126°44'04"	Y	176322.34					
2	6153	X	276032.31	36°53'08"	X	376338.88	중부	5.37	경 암 동 490-2	2012. 11.29	철재
		Y	176335.08	126°44'07"	Y	176407.45					
3	6154	X	276075.34	36°53'09"	X	376381.91	중부	5.66	경 암 동 490-2	2014. 02.12	철재
		Y	176340.76	126°44'07"	Y	176413.14					
4	6155	X	276053.76	36°53'09"	X	376360.32	중부	4.61	경 암 동 486-5	2014. 02.12	철재
		Y	176394.68	126°44'10"	Y	176467.06					
5	6156	X	276116.26	36°53'11"	X	376422.82	중부	4.35	경 암 동 486-4	2012. 11.29	철재
		Y	176423.44	126°44'11"	Y	176495.83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6	6157	X	276144.20	36°53'11"	X	376450.78	중부	4.44	경 암 동	2012.	철재

		Y	176359.68	126°44'08"	Y	176432.08			488-12	11.29	
7	6158	X	276167.19	36°53'12"	X	376473.78	중부	5.78	구 암 동 488-27	2012. 11.29	철재
		Y	176326.39	126°44'07"	Y	176398.80					
8	6159	X	276218.18	36°53'14"	X	376524.76	중부	5.88	구 암 동 480-14	2012. 11.29	철재
		Y	176374.80	126°44'09"	Y	176447.21					
9	6160	X	276317.13	36°53'17"	X	376623.71	중부	6.51	구 암 동 601-40	2012. 11.29	철재
		Y	176471.66	126°44'13"	Y	176544.08					
10	52243	X	274564.92	35°58'16"	X	374871.43	중부	4.76	서흥남동 765	2013. 05.07	철재
		Y	173825.21	126°42'38"	Y	173897.56					
11	52244	X	274567.90	35°58'16"	X	374874.41	중부	4.66	서흥남동 763-15	2013. 05.07	철재
		Y	173846.37	126°42'39"	Y	173918.72					
12	52245	X	274563.58	35°58'16"	X	374870.09	중부	4.74	서흥남동 758-7	2013. 05.07	철재
		Y	173932.30	126°42'42"	Y	174004.66					
13	52246	X	274498.89	35°58'14"	X	374805.40	중부	5.10	서흥남동 896	2013. 05.07	철재
		Y	173862.85	126°42'40"	Y	173935.20					
14	52247	X	274503.99	35°58'14"	X	374810.50	중부	4.74	서흥남동 26-5	2013. 05.07	철재
		Y	173824.93	126°42'38"	Y	173897.28					
15	52248	X	276049.60	35°59'04"	X	376356.10	중부	6.84	서흥남동 504-18	2013. 05.07	철재
		Y	176250.02	126°44'15"	Y	176322.36					
16	52249	X	276023.08	35°59'03"	X	376329.58	중부	5.58	서흥남동 708	2013. 05.07	철재
		Y	176375.17	126°44'20"	Y	176447.51					
17	52250	X	275838.22	36°58'57"	X	376144.72	중부	5.88	서흥남동 504-3	2013. 05.07	철재
		Y	176249.56	126°44'15"	Y	176321.90					

번 호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평면직각좌표 (m)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18	52251	X	271972.38	35°56'53"	X	372279.19	중부	5.141	대야면접 산리 958	2013. 06.12	철재
		Y	189375.00	126°52'59"	Y	189447.52					
19	52252	X	271795.05	35°56'47"	X	372101.86	중부	5.01	대야면접 산리	2013.	철재

		Y	189149.63	126°52'50"	Y	189222.16			90-7	06.12	
20	52253	X	271703.70	35°56'44"	X	372010.50	중부	5.46	대야면접 산리 91-11	2013. 06.12	철재
		Y	189033.73	126°52'45"	Y	189106.25					
21	52254	X	271753.69	35°56'46"	X	372060.50	중부	4.83	대야면접 산리 86-1	2013. 06.12	철재
		Y	189344.43	126°52'58"	Y	189416.95					
22	52255	X	274785.38	35°58'23"	X	375091.73	중부	5.16	문 화 동 916-1	2014. 02.12	철재
		Y	172992.74	126°42'05"	Y	173064.90					
23	52256	X	274788.72	35°58'23"	X	375095.11	중부	5.24	문 화 동 917-19	2014. 02.12	철재
		Y	173122.68	126°42'10"	Y	173194.83					
24	52257	X	274719.01	35°58'21"	X	375025.41	중부	5.13	문 화 동 548-1	2014. 02.12	철재
		Y	173124.17	126°42'10"	Y	173196.35					
25	52258	X	274721.19	35°58'21"	X	375027.52	중부	6.20	문 화 동 604-2	2014. 02.12	철재
		Y	172948.75	126°42'03"	Y	173020.93					
26	52259	X	276959.96	35°59'34"	X	377266.66	중부	24.88	임 피 면 축 산 리 172-1	2014. 03.12	철재
		Y	187217.21	126°51'33"	Y	187289.62					
27	52260	X	276820.76	35°59'30"	X	377127.47	중부	15.89	임 피 면 축 산 리 151-2	2014. 02.12	철재
		Y	187407.36	126°51'40"	Y	187479.78					
28	52261	X	276782.34	35°59'29"	X	377089.05	중부	13.84	임 피 면 축 산 리 583-3	2014. 02.12	철재
		Y	187479.20	126°51'43"	Y	187551.62					
29	52262	X	276729.91	35°59'27"	X	377036.62	중부	12.81	임 피 면 축 산 리 583	2014. 02.12	철재
		Y	187436.09	126°51'41"	Y	187508.50					

번 호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30	52263	X	276761.69	35°59'28"	X	377068.39	중부	15.77	임 피 면 축 산 리 138-7	2014. 03.12	철재
		Y	187238.42	126°51'33"	Y	187310.84					
31	52264	X	276752.56	35°59'28"	X	377059.26	중부	14.74	임 피 면 축 산 리 143-2	2014. 03.12	철재
		Y	187315.01	126°51'36"	Y	187387.42					
32	52265	X	276719.20	35°59'27"	X	377025.90	중부	14.14	임 피 면	2014.	철재

		Y	187372.93	126°51'39"	Y	187445.35			축 산 리 143-4	03.12	
33	52266	X	276694.30	35°59'26"	X	377001.00	중부	13.75	임 피 면 축 산 리 563-1	2014. 03.12	철재
		Y	187418.59	126°51'41"	Y	187491.01					
34	52267	X	276719.52	35°59'27"	X	377026.22	중부	14.65	임 피 면 축 산 리 141	2014. 03.12	철재
		Y	187287.02	126°51'35"	Y	187359.43					
35	52268	X	276621.62	35°59'23"	X	376928.32	중부	17.47	임 피 면 축 산 리 127-4	2014. 03.12	철재
		Y	187117.22	126°51'29"	Y	187189.62					
36	52269	X	276606.80	35°59'23"	X	376913.50	중부	13.99	임 피 면 축 산 리 562-4	2014. 03.12	철재
		Y	187258.56	126°51'34"	Y	187330.98					
37	52270	X	276546.54	35°59'21"	X	376853.25	중부	13.08	임 피 면 축 산 리 563-4	2014. 03.12	철재
		Y	187381.39	126°51'39"	Y	187453.81					
38	52271	X	276552.88	35°59'19"	X	376859.58	중부	10.74	임 피 면 축 산 리 563-4	2014. 03.12	철재
		Y	187449.24	126°51'42"	Y	187521.66					
39	52272	X	276495.72	35°59'19"	X	376802.42	중부	13.80	임 피 면 축 산 리 101-8	2014. 03.12	철재
		Y	187216.41	126°51'33"	Y	187288.83					
40	52273	X	276444.51	35°59'18"	X	376751.22	중부	12.73	임 피 면 축 산 리 561-1	2014. 03.12	철재
		Y	187341.01	126°51'38"	Y	187413.44					
41	52274	X	276432.94	35°59'17"	X	376739.62	중부	15.29	임 피 면 축 산 리 591	2014. 03.12	철재
		Y	187024.48	126°51'25"	Y	187096.91					

번 호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평면직각좌표 (m)						
				(도-분-초)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42	52275	X	276374.59	35°59'15"	X	376681.29	중부	14.94	임 피 면 축 산 리 568-4	2014. 03.12	철재
		Y	187085.36	126°51'27"	Y	187157.78					
43	52276	X	276335.00	35°59'14"	X	376641.69	중부	13.75	임 피 면 축 산 리 568-8	2014. 03.12	철재
		Y	187173.36	126°51'31"	Y	187245.78					
44	52277	X	276344.97	35°59'15"	X	376651.68	중부	12.43	임 피 면 축 산 리 568-13	2014. 03.12	철재
		Y	187317.79	126°51'37"	Y	187390.22					

45	52278	X	276378.49	35°59'16"	X	376685.20	중부	10.84	임 피 면 축 산 리 591-3	2014. 03.12	철재
		Y	187468.34	126°51'43"	Y	187540.76					
46	52279	X	276272.99	35°59'12"	X	376579.70	중부	12.53	임 피 면 축 산 리 568-12	2014. 03.12	철재
		Y	187298.01	126°51'36"	Y	187370.44					
47	52280	X	276213.69	35°59'10"	X	376520.40	중부	14.35	임 피 면 읍 내 리 765-17	2014. 03.12	철재
		Y	187044.80	126°51'26"	Y	187117.23					
48	52281	X	276160.82	35°59'09"	X	376467.53	중부	12.51	임 피 면 읍 내 리 7-7	2014. 03.12	철재
		Y	187298.55	126°51'36"	Y	187370.98					
49	52282	X	276168.93	35°59'09"	X	376475.64	중부	13.03	임 피 면 읍 내 리 5-1	2014. 03.12	철재
		Y	187483.68	126°51'43"	Y	187556.11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4-3964)

군산시 고시 제2014-45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1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9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2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6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4 - 4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4. 28.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지곡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
 - 가. 주택조합
 - 1) 명칭 및 대표자 : 지곡동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채수우
 -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동지곡길 53, 은파코아루아파트 상가 2층 203호
 - 나. 등록사업자
 - 1) 명칭 및 대표자 : 주식회사서희건설 대표이사 곽선기
 -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번지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지곡동 226번지외 21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15,925.5000m²
 - 다. 건축면적 : 3,860.7862m²
 - 라. 연 면 적 : 52,977.6743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6동 15~19층, 382세대

59A 형	59.8331m ²	28세대
59B 형	59.7405m ²	41세대
73 형	73.3115m ²	14세대
84A 형	84.3213m ²	187세대
84B 형	84.9736m ²	74세대
84C 형	84.7805m ²	38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82,041,286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04. 20~ 2015. 12. 31

4.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 지 면 적		16,000.00m ²	15,925.50m ²	감 74.5m ²
사 업 기 간		2013. 04. 20 ~ 2015. 8. 31	2013. 04. 20 ~ 2015. 12. 31	증 4개월
건 축 면 적		3,846.2088m ²	3,860.7862m ²	증 14.5774m ²
연면적	계	53,071.9170m ²	52,977.6743m ²	감 94.2427m ²
	지상	39,478.3507m ²	39,492.9281m ²	증 14.5774m ²
	지하	13,593.5663m ²	13,484.7462m ²	감 108.8201m ²
기타 변경사항		1. 지하 파일 위치변경 2. 건축 마감재료의 변경 3. 기계설비, 전기설비 재료의 변경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4년 4월 28일

6.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4.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2	지곡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226번지일원	17,651	감) 15.5	17,635.5	

나.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 사유
변경	42	군산시 지곡동 226번지 일원	○면적변경 - 17,651 → 17,635.5 (감 15.5)	지적분할에 의한 확정면적으로 정정

5.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4	20~23	보조 간선	1,030	나운동 광로2-3	나운동 대로2-9	일반 도로	나운 3택지	전북고41 (‘95.3.28)	
기정	중로	1	17	20~23	보조 간선	380	지곡동 대로2-11	나운동 중로1-14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1	247	10	국지 도로	212	중로1-14	중로2-27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2	554	8	국지 도로	348	중로1-17	중로2-13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1	17,651	감) 15.5	17,635.5	1-①	군산시 지곡동 226번지 일원	16,000	감) 74.5	15,925.5	공동주택 용지
					1-②	군산시 지곡동 606번지 일원	295	-	295	도로용지 (중로1-14)
					1-③	군산시 지곡동 226-4번지 일원	475	증) 58	533	도로용지 (중로1-17)
					1-④	군산시 지곡동 149-18번지 일원	881	증) 1	882	도로용지 (소로2-554)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1-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25%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

라.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지역에서의 차량출입은 불허함
주변도로 개설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확폭 - 지정 중로1-14호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L=106m) 확폭 : B = 증 3m - 지정 중로1-17호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간(L=160m) 확폭 : B = 증 3m - 소로2-554호선 미개설구간(L=106m, B=8m) 개설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4-675호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201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4. 18.

군 산 시 장

공고기간 : 2014. 4. 18. ~ 2014. 4. 30.

1.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61 (삼학주공아파트)

임대사업자	성 명	박 달 식	생년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화번호	
	주 소(사무소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33-1번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61 (삼학주공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36형	177	12,118,000	70,650	12,118,000	70,650	변경 전
			12,699,000	74,040	12,699,000	74,040	변경 후
	46형	135	15,342,000	88,310	15,342,000	88,310	변경 전
			16,078,000	92,540	16,078,000	92,540	변경 후
	합 계	312					
	임대차 계약기간	변경전 2011년 12월 1일 ~ 2013년 11월 30일			변경후 2013년 12월 1일 ~ 2015년 11월 30일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7길 56 (산북동, 하나리움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대표자) 장 치 성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하나건설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 (진월동)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번지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임대 [], 5년 임대 [○], 매입임대 []			토지임대부 임대 [], 준공공임대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 임대조건)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9896㎡	823	52,700,000	43,102,000	394,000	86,150,000	293,000
	59.9845㎡	129	52,700,000	44,524,000	402,000	88,990,000	298,000
	합 계	952					
	임대차 계약기간			2014.02.27 ~ 2016.02.26			
	분양전환 시기			2019.02.26 (최초입주개시 후로부터 5년)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59.9896㎡		138,904,259원	
				59.9845㎡		141,749,645원	

3.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237-1(사정동)

임대사업자	성 명 박연태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4. 전라북도 군산시 동국사길19(금광동)

임대사업자	성 명 (대표자)	신재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전라북도 동국사길19, 501호(금광동)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동국사길19, 303, 405호(금광동)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V],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26.03	1				3,000,000	300,000	
	26.03	1				35,000,000		
	합 계	2				38,000,000	3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4.2.1.~ 2015.1.31. - 2014.3.2.~ 2015.3.1.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5. 전라북도 군산시 미릉로41(미릉동, 미릉주공2차아파트)

임대사업자	성 명 (대표자)	박계성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3길, 101동606호(모현동1가,배산제일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미릉로41, 904,1205호(미릉동, 미릉주공2차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V],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0.28㎡	1				5,000,000	450,000	
	50.28㎡	1				10,000,000	350,000	
	합 계	2						
	임대차 계약기간	- 2013.10.10 ~ 2015.10.9. - 2013.12.17 ~ 2015.12.16.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군산시 공고 제2014 - 726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4. 5. 1.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4. 5. 1.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안전총괄과	군산시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전자이미지 공인포함)		흑각	2014. 4. 28일 직제개편에 따른 안전총괄과 신설

4. 폐기공인 및 인영(1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재난관리과	군산시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전자이미지 공인포함)		흑각	2014. 4. 28일 직제개편에 따른 재난관리과 폐지